

문서번호 대의협 제711-09986호

시행일자 2020. 11. 17.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의안번호-2105333('20.11.13)

3. 최혜영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우리협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의견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가. 법안 주요내용

-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및 제88조)

나. 회신기한 : 2020. 11. 26.(목) 까지

다. 회신처 :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 유주현 대리  
(E-mail : h1324yjh@naver.com)

붙임 : 의안원문 1건. 끝.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과목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 의사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  
협의회장

# 대한 의사 협 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33
----------	------

발의연월일 : 2020. 11. 13.

발 의 자 : 최혜영 · 고영인 · 김상희  
김성주 · 김원이 · 김홍걸  
양정숙 · 이규민 · 인재근  
주철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초래되었음.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발생한 8월에는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 결국 숨지는 사례까지 발생하였음.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

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및 제88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한 부당한 정지 등 제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이하 “필수유지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2.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업무
3.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를 포함한다)

제8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9조의2를 위반한 경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생략)</p> <p>&lt;신설&gt;</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59조의2를 위반한 경우</u></p>
--	--